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준(유해법) 및 방법

2017. 5. 24.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안전1팀

이호령 차장

Contents

I. 검사의 종류 및 규정

I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전준비문서

II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법) 정기검사 기준 안내

IV. 공단 사업소개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I. 감사의 종류 및 규정

1. 검사 및 진단 구분

❖ 설치검사(규칙 제23조)

- (대상 및 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취급시설 가동 이전 실시
-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 설치검사는 ①사전서면검사와 ②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현장확인검사는 서면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

❖ 정기검사(규칙 제23조)

-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시기) 영업허가 대상 : 1년 마다, 그 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2년 마다
(단, 안전진단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자는 1년간 정기검사 면제)
-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 수시검사(규칙 제23조)

-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화학사고가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시기) 화학사고 발생시 : 7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장이 검사를 명한 경우 : 지체 없이
- (방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그 결과 신고(신고서, 검사결과서)

⇒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1. 검사 및 진단 구분

❖ 안전진단(규칙 제24조)

-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시기)
 - ① 설치·수시·정기검사 결과 취급시설의 구조물,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결과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② 장외영향평가서에 의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 검토결과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고위험도 4년, 중위험도 8년, 저위험도 12년 마다 : 위험도 검토결과 없는 경우 4년
- (방법) 검사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신고서, 안전진단결과서)

⇒ 안전진단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 사용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검사·안전진단기관(규칙22조)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자

2. 검사 및 진단 단계별 적용기준

구 분	1단계 (2015.1.1~2019.12.31)	2단계 (2020.1.1~ 이후)
검사기준 및 결과판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 권고)	화학물질관리법
검사항목	총 126개 항목 (<u>유해법 41개</u> + 화관법 85개 항목)	<u>정기·수시 : 총 192개 항목</u> 설치검사 : 총 330개 항목
진단항목 및 방법	화학물질관리법 기본항목(19개) + 지적항목 + 선택항목(설치, 정기, 그 외)	화학물질관리법 기본항목(19개) + 지적항목 + 선택항목(설치, 정기, 그 외)
검사 및 진단방법	육안 + 측정	육안 + 측정
검사장비	유출누출검사 : VOC측정기, 암모니아측정기, 염산측정기, 불산측정기 취급장소관리 : 온도계(열화상), 조도계, 거리측정기 취급시설관리 : 초음파두께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 2015.1.1일 이후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검사 실시
 (그러나, 2014.12.31일 이전 착공한 시설의 적합/부적합 판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실시 : 2019.12.31까지)

3. 검사 및 진단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검사단위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식에 따라

- ①제조/사용시설, ②실내저장보관시설, ③실외저장보관시설, ④지하저장보관시설,
⑤차량운반시설, ⑥배관이송시설로 구분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용시설 중 안전구역으로 구획된 하나의 설비군을 하나의 제조사용 시설 단위로 본다. 단, 검사기관이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안전진단 대상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감안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단위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정기검사는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날(설치검사 결과서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매1년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다만,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최종 안전진단일이 기준이 됨

3. 검사 및 진단방법 등에 관한 규정

❖ (변경)시설의 검사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따르며, 이 경우 가동 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저장보관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
-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변경
- 사업장내 증설, 설치위치 변경, 화학물질 품목 변경 등의 사유로 사고 발생시 주변지역 환경에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 등의 장외영향평가 정보의 변경 시

❖ 검사 결과 처리

설치·정기·수시검사 결과는 희망일로 부터 30일 이내 검사신청인에게 결과서를 교부하며, 검사신청인은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완료 후 부적합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전준비문서

1. 사전준비문서 목록

<사업장 사전준비 문서 목록>

※ 아래의 항목 중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류(사본)를 검사 당일 검사자에게 제출

번호	사전준비 문서	준비여부 (O, X)
1	유해화학물질 허가증	
2	방지시설(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등)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3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화학물질관리협회) -법 제 49조 참조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된 검사서 또는 확인증 지하저장시설누출, 가스저장탱크, 전기설비, 압력탱크 검사서 등	
5	유독물 운반차량 등록증(차량관련서류 등)	
6	유해화학물질 현장배지도, 시설도면(건축물 등), 공정흐름도(PFD), 배관 및 계장도(P&ID) 등	
7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8	근로자 안전교육 관련 서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신고서·확인증 (연간교육일지, 관리자·취급자 교육 수료증, 교육결과보고서) -법 제33조 참조	
9	안전보호구 인증서(호흡보호구, 보호의, 보호장갑 등)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56조2항, 별지 제75호서식 참조	
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대장 -법 제26조,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참조	
12	장외영향평가서 -법 제23조	
13	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 계획서, 예방규정 등) -법 제41조	
14	누출사고 대비 프로그램(방제 시나리오), 차량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방제카드	
15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세금계산서 발행용) - 발행일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기재 필수	

2. 사전준비문서

번호	사전준비 문서
1	<p>○ 유해화학물질 허가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증 확인 : 기존 등록사업장은 변경허가 사유 발생전까지는 계속 사용 (현재 지자체 → 신규 지방유역청)
2	<p>○ 방지시설(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등)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증 신고 필증 확인
3	<p>○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서, 가스저장탱크 검사서, 전기설비 검사 확인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도 검사 성적서, 가스안전공사 검사성적서, 전기 사용전 검사 결과서(전기안전공사 3년 1회 정기검사 받음) - 최종 검사일, 주기 등 확인
4	<p>○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화학물질관리협회)[법 제4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화학물질관리 협회에 보고하므로 보고자료 확인 - 사용 - 제조, 저장 - 보관 시설은 허가량과 실제 사용량 비교하여 50% 이상 증가시 변경허가 필요
6	<p>○ 유해화학물질 현장배치도, 공정흐름도(PFD), 배관 및 계장도(P&ID)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면 확인

2. 사전준비문서 - 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 교육 대상 및 시간

구분	대상자	시간/주기	교육주관 기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술인력	16시간/2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단, 온라인 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단,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은 8시간/2년)		
	취급 담당자		
	운반자	8시간/2년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교육	2시간/년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타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32시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위해계획서 작성자(전문교육)	16시간	화학물질안전원

※ 운반자 안전교육은 17.1.1.부터 적용되며, '16년말까지는 16시간/2년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부장관이 전문성을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2. 사전준비문서 - 관리자신고

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종류

-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2. 선임 기준

-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1명(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책임자 겸직 가능)
-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취급량 및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업종별 종사자 수	
취급량	명	업종	명
1,000톤 미만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	종사자 500명당 1명 추가 선임
1,000톤 이상이고 10,000톤 미만	2		
10,000톤 이상이고 100,000톤 미만	3		
100,000톤 이상이고 1,000,000톤 미만	4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종사자 5,000명당 1명 추가 선임
1,000,000톤 이상	5		

2. 사전준비문서 - 자체점검대장,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수속	결과	서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동통로 : 출입부 및 열선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위험 : 누출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의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 - 기체 상의 유해화학물질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부식 손상 : 누출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 인공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용기 또는 인화성 가스 용기 용기 등에 문제가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동화하의 위험에 있는 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치 주변에 문제가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정보,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 등 감시계로 작동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기 종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위험 : 누출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문제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input type="checkbox"/> 정밀 재점검 필요	

※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200mm×210mm(확장지 : 6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화학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종)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일련:					1.		2.		3.							
(단위: 톤)																
연월일	이월량	제조·수입·구입량					사용·판매량								제조장	비고
		수량	수량	수량(상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명)	주소	연월일	수량	수량	수량(상종)	사업자등록번호(판매장명)	주소	연월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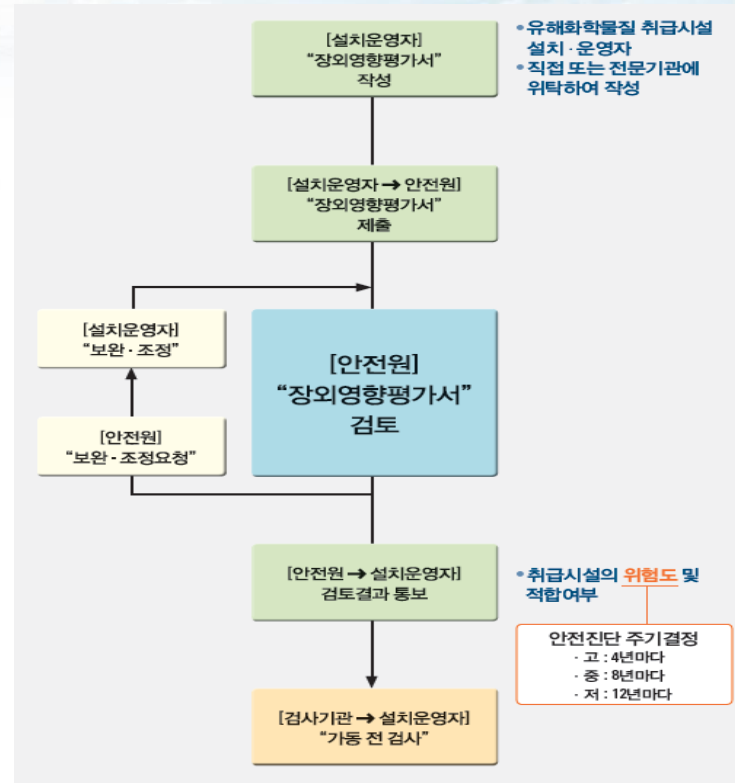
화학물질 보관·저장 관리대장																
제품(상종)명:					주요용도:											
금지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1.		2.		3.							
일련:					1.		2.		3.							
(단위: 톤)																
연월일	이월량	위탁인					위탁인								제조장	비고
		수량(상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장	연월일	수량(상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제조장						

200mm×210mm(확장지 : 60g/㎡)

2. 사전준비문서 - 장외영향평가

[화관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 ❶ 2015년 12월 31일까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❷ 2016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❸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❹ 2018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❺ 2019년 12월 31일까지
 -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화관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❶ 2018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❷ 2019년 12월 31일까지
 - 위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제출 대상자	■					유독물 영업등록,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장외영향평가서 기한 내 제출
PSM(업종) 작성, 제출 대상자	■					
PSM(물질) 작성, 제출 대상자 중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의 유해, 위험물질 연간 1,000톤 이상 취급	■	■				
PSM(물질) 작성, 제출 대상자 중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의 유해, 위험물질 연간 1,000톤 미만 취급	■	■				
그 외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톤 이상 취급	■	■	■	■		
그 외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톤 미만 취급	■	■	■	■	■	

2. 사전준비문서 - 위해관리계획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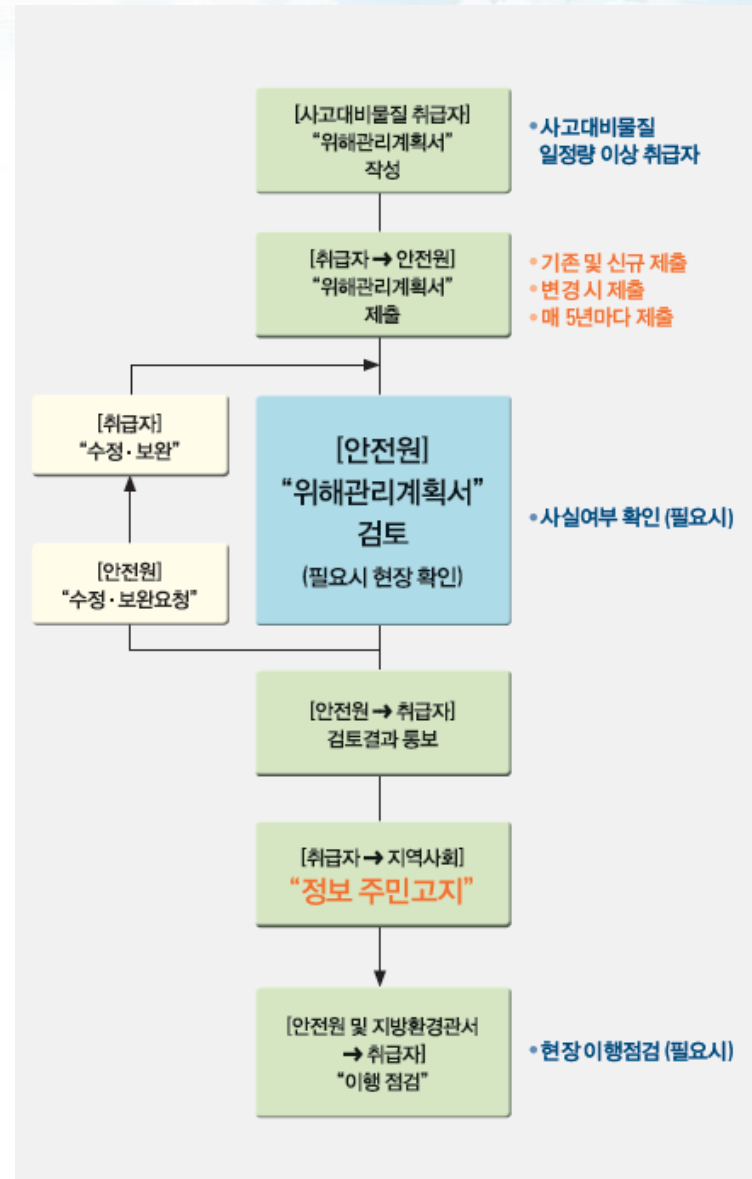
- ▶ 신규시설 또는 기존시설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 신규시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가 필요하므로 영업개시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영업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업개시 3-4개월 전에 제출

기존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자 중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의 안전성향상계획 작성 ·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 제출 대상
- 2017년 제출
 - 기타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 사회 고지

1. 시기 : 매년 1회 이상
2. 고지 대상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의 경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3. 고지 방법 - 아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함,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 공동 고지 가능
 - (가) 서면통지 :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 (나) 개별설명 : 개별설명 후에는 서명날인을 받아야 함
 - (다) 집합전달 : 공청회 또는 설명회 방식
 - (라)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마)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4. 고지 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위해관리계획 고지서)
5. 고지 내용
 -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6. 고지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
7.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지
8. 지역사회 고지 후 보관해야 하는 사항
 - (1)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서
 - (2)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 방법



2. 사전준비문서 - 누출사고 대비 프로그램

[사고 대응 방법 결정시 고려사항]

1) 누출차단 가능성 판단

- 누출량이 많아 현장에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누출 부위를 최대한 막은 후, 사고 확대 방지 조치 수행(제방, 우회, 웅덩이 설치 등 하천유입방지)
- 우수 맨홀 등 외부 누출구를 최우선으로 차단



- 누출 잔여물은 희석, 중화처리 등의 방법으로 저리하되 희석수에 의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2) 화재 소화시 주수위험성 판단

- 물을 주입하여 소화가능시 소화활동 수행하고 불가시 연소확대방지 조치 수행
- 물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마수로 등에 웅덩이 또는 임시제방을 설치하여 화학물질이 소방용수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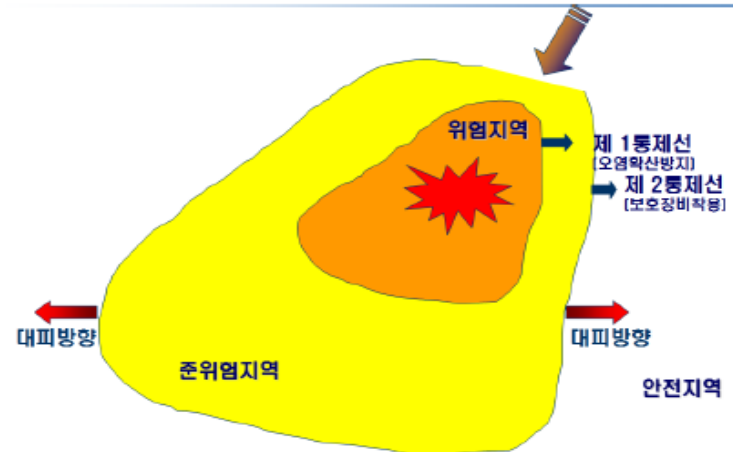
- 소화과정에서 우수맨홀 등을 통하여 하천 본류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류의 취정수장에 통보하고 실제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유출물질 종류, 양 등을 전파한 후 주기적으로 수질을 분석, 농도변화 감시

[주민 대피 방송 예시]

- 에서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시 ○○분 현재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지역으로) 대피/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피/소개지역은 사고지점과 바람방향을 고려하여 결정

주민 대피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지점 가까이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직각방향으로 대피
 2. 대피할 때에는 가능한 방독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우의나 비닐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3. 건물 내로 대피했을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문틈을 꼭 막아서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4. 오염된 지역 내에서는 물이나 음식물은 먹지 말고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등은 만지지 말 것
- 이상 ○○○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2. 사전준비문서 - 차량 방제카드 및 자동차 등록증

유해화학물질 안전카드

물질명		UN No.											
		CAS No.											
해당법규 및 위험·유해성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충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별		품명	유독 물질	허가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	사고 대비 물질	화약	폭약	화공 품			
제 1 류	제 2 류										제 3 류	제 4 류	제 5 류
특성		위험성	유해성		환경 오염성	그 밖의 위험성		성상					
금수성	폭발성	가연성	유해가스발생		눈·피부 접촉시 위험성	하천등 유입주의		고체	액체	기체	수용성		
			상온	고온								물과 접촉	
<p><사고발생시의 응급조치 요령></p> <p>1. _____</p> <p>2. _____</p> <p>3. _____</p> <p>4. _____</p> <p>5. _____</p>													
<p><긴급신고 번호> : 소방서(119), 경찰서(112), 시군구청(128), 한국도로공사 (080-701-0404)</p> <p><긴급신고 내용> : 사고시각, 사고장소, 물질명, 사고유형, 부상자 유무, 운송자 명칭</p>													
<p><긴급 연락처></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 padding: 5px;"> 화주 주소 전화 (주간) (야간)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 padding: 5px;"> 운송자 주소 전화 (주간) (야간) </td> </tr> </table>												화주 주소 전화 (주간) (야간)	운송자 주소 전화 (주간) (야간)
화주 주소 전화 (주간) (야간)	운송자 주소 전화 (주간) (야간)												

[별지 제(호)서시] 붉은 번호판 혼합형 갠 번호판 (앞쪽)

자 동 차 등 록 증

제 201212-003304 호 최초등록일 : 2011 년 11 월 17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중형 승용	③ 용도 자가용
④ 차 명	⑤ 형식 및 연식 GA692	2012
⑥ 차 대 번호	⑦ 원동기형식 LTD	
⑧ 사용본거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주 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이권

2012년 12월 20일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1. 제 원

① 길이	4865 mm	② 너비	1855 mm
③ 높이	1465 mm	④ 중량	1855 kg
⑤ 배기량	1998 cc	⑥ 정격 출력	141/6200 hp/rpm
⑦ 순차질량	0 kg	⑧ 최대 적재량	0 kg
⑨ 기동수	4 기동	⑩ 연료의 용량 (연비)	12.4 km/L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⑪ 구분 ⑫ 번호판 발급일 ⑬ 봉인일 ⑭ 발급대행자 확인

3. 저당권 등록사실

⑮ 구분 (실질 또는 말소) ⑯ 일 자

※ 기타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출)를 열람·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검사 유효기간

⑰ 연월일 부 피	⑱ 연월일 과 지	⑲ 검사행 장소	⑳ 주행거리	㉑ 검사행 일자 확인	㉒ 검사 구분
2011-11-17	2015-11-18				

※ 주의사항 : ⑳항 첫째 칸에는 신규등록임을 기재합니다.

※ 비 고

천안시 승고(허위)과거(부기세제외) : 22,348,181 원

Ⅲ.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해법) 정기검사 기준 안내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제조사용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유해표</p> <p>바닥</p>	<p>바닥면 방수처리 여부 (방수콘크리트, 코팅 등)</p>	<p>① 바닥 : 일반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바닥 두께 10cm 이상 입증자료 제시</p> <p>② 바닥면 균열 등 파손부위 사전조치 필요</p> <p>③ 상기외조건 : 바닥면 방수코팅 여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배수 시설 설치 및 하폐수 연결상태</p>	<p>① 설비주변 적정 집·배수 시설 등 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p> <p>② 방류벽, 트렌치 등 설치 가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제조사용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2	<p style="text-align: center;">유 해 범</p> <p>폭발,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p>	<p>안전장치 (경보기 등) 작동상태</p>	<p>① 검지기, 경보기, CCTV 중 1개 이상 설치 여부 및 전원공급상태 여부 ② 안전경보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설비의 경우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CCTV, 점검 등) 여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4	<p style="text-align: center;">야 외 포</p> <p>도로, 배수로의 배수관리</p>	<p>배수 시설 설치 및 하폐수 연결상태</p>	<p>① 설비주변 적정 집·배수 시설 등 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② 방류벽, 트렌치 등 설치 가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제조사용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5	유 해 법 창문 보호철망, 출입문 잠금장치 등 안전 설비	창문 보호철망,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① 창문의 보호철망 (실내보관에만 해당) 설치 여부 ②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및 관리 여부 
6	유 해 법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	① 액체상태의 유독물 적재, 하역장소에 유출방지턱 또는 트렌치 등 설치 여부 ② 건물내부에서 적재하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정된 구역 안 또는 건물 밖으로의 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③ 주입구가 방류턱 외부 또는 실외 등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누액받이 등 설치여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제조사용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3	<p>또액기</p> <p>종업원의 안전교육</p>	교육 실시 자료 비치	<p>① 허가대상 시설은 교육 실시 확인자료 및 교육내용의 비치여부로 확인</p>
4	<p>또액기</p> <p>유독물 성상에 따른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 방법 (유독물취급자)</p>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제조사용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5	유 해 번	보호장비류 비치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	<p>보호장비류 정상작동</p> <p>종류 및 수량 적정여부 방제자재 사용가능</p>	<p>① 개인보호구 : 작업자용 + 방문자용</p> <p>② 보호구 등 형식 : 제2014-259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규정) 참조</p> <p>③ 방독면 : 사업장내 보관중인 MSDS 를 확인하고, 상기 형식의 적정성 및 필터 유효기간 내 비치 여부</p> <div style="text-align: right;">  </div>
		유 해 번	방제약품 비치 (중화, 흡착, 희석, 회수 등)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제조사용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유해포피	비상구 및 대피로	비상구 및 대피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상구 및 대피로 확보여부 ② 유도등, 비상구 표지판 등 설치 여부
2	유해포피	비상시 유도등	유도등 작동상태	 
3	유해포피	소화기	소화기 및 소화시설 비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화전 또는 소화기 설치여부 ② 소화기 점검 및 점검표 (월 1회 이상) 기록 여부 ③ 외부위탁 소화기 점검기록부 인정 가능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제조사용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외관밀폐</p> <p>액상유독물 보관상태</p>	외관밀폐 상태	<p>① 제조사용의 투입구(주입구) : 밀폐여부 확인 ② 드럼 · 말통 등 유독물 용기 : 밀폐상태 · 보관 여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2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유해법</p> <p>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구분 · 보관</p>	<p>유독물 관리대장 및 보관상태 확인</p> <p>칸막이 및 구획선 설치</p>	<p>①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여부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른 서류 검토</p> <p>①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사용할 경우 : 물질별로 구획선 설치 · 구분 보관 (용기 또는 포장에 유독물 표시 필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제조사용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유 해 표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 (인화점이 35°C이하 물질에 해당하는 반응시설)	접지시설 손상상태	<p>① 인화점 35도 이하의 물질인 경우 : 접지선 설치 여부 및 손상 여부 (MSDS 참고)</p> 
			벤트라인 손상상태	<p>① 대기배출시설에 (허가증 기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방지시설과 덕트 연결 여부 및 파손 여부 확인</p> 
2	유 해 표	벤트라인	벤트라인과 방지시설 연결상태	<p>① 제조·사용 시설에 사용되는 말통, 저장용기, 드럼 등 : 밀폐, 균열, 파손 여부</p> 
			저장용기 외관상 밀폐상태	<p>① 제조·사용 시설에 사용되는 말통, 저장용기, 드럼 등 : 밀폐, 균열, 파손 여부</p> 
3	유 해 표	저장용기 누수	저장용기 균열 파손여부 확인	<p>① 제조·사용 시설에 사용되는 말통, 저장용기, 드럼 등 : 밀폐, 균열, 파손 여부</p> 
			저장용기 외관상 밀폐상태	<p>① 제조·사용 시설에 사용되는 말통, 저장용기, 드럼 등 : 밀폐, 균열, 파손 여부</p>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제조사용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요약표	이송배관시설 형식	이송배관 시설 외관상태	① 배관 : 부식, 손상 여부
2	요약표	펌프의 마모상태 (자체점검)	심한 부식, 손상 및 노후 정도 유출상태 확인 (펌프관리상태)	① 펌프 : 심한 부식, 손상, 노후 여부 및 관리 여부
3	요약표	펌프의 Seal 부분 누출 (자체점검)	펌프 Seal 손상 및 노후화 상태	① 펌프 seal 부분 : 누출 (Leak) 여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내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유해화학물질</p> <p>바닥</p>	<p>바닥면 방수처리 여부 (방수콘크리트, 코팅 등)</p>	<p>① 바닥 : 일반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바닥 두께 10cm 이상 입증자료 제시</p> <p>② 바닥면 균열 등 파손부위 사전조치 필요</p> <p>③ 상기외조건 : 바닥면 방수코팅 여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배수 시설 설치 및 하폐수 연결상태</p>	<p>① 설비주변 적정 집·배수 시설 등 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p> <p>② 방류벽, 트렌치 등 설치가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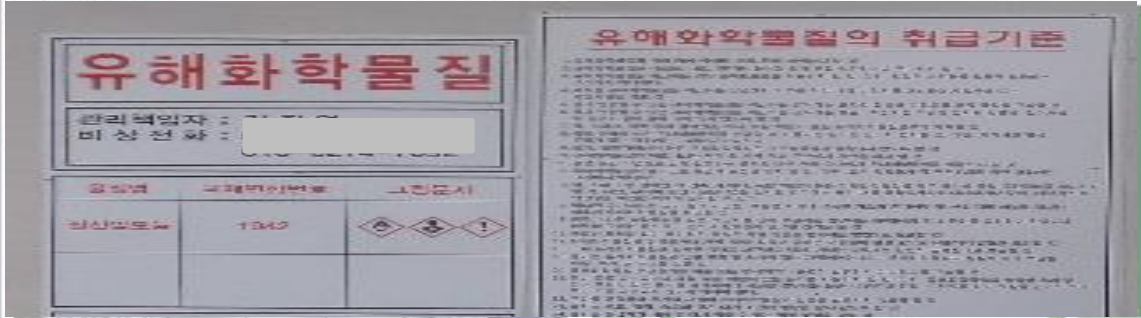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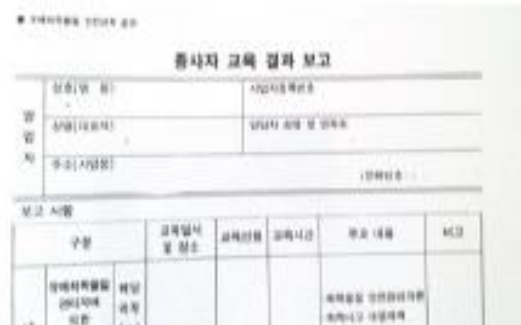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내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2	유해법	폭발,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안전장치 (경보기 등) 작동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검지기, 경보기, CCTV 중 1개 이상 설치 여부 및 전원공급상태 여부 ② 안전경보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설비의 경우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CCTV, 점검 등) 여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4	유해법	도로, 배수로의 배수관리	배수 시설 설치 및 하폐수 연결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비주변 적정 집·배수 시설 등 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② 방류벽, 트렌치 등 설치 가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내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5	<p>유해변</p> <p>창문 보호철망, 출입문 잠금장치 등 안전 설비</p>	<p>창문 보호철망,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창문의 보호철망 (실내보관에만 해당) 설치 여부 ②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및 관리 여부 
6	<p>유해변</p> <p>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액체상태의 유독물 적재, 하역장소에 유출방지턱 또는 트렌치 등 설치 여부 ② 건물내부에서 적재하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정된 구역 안 또는 건물 밖으로의 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③ 주입구가 방류턱 외부 또는 실외 등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누액받이 등 설치여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내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유해표판 표시판 및 안전수칙을 포함한 게시판	표시판과 안전게시판의 식별가능 상태	<p>① 실내저장·보관시설 주변 표시판 및 안전수칙 게시판 설치 여부 :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양식, 크기 등 준수)</p> 
3	유해표판 종업원의 안전교육	교육실시 자료비치	<p>① 허가대상시설은 교육실시 확인자료 및 교육내용의 비치 여부로 확인</p>
4	유해표판 유독물 성상에 따른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 방법 (유독물취급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내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5	유 해 편	보호장비류 비치 (방독면, 보호장갑, 보호안경 등)	보호장비류 정상작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보호구 : 작업자용 + 방문자용 ② 보호구 등 형식 : 제2014-259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규정) 참조 ③ 방독면 : 사업장내 보관중인 MSDS를 확인하고, 상기 형식의 적정성 및 필터 유효기간내 비치 여부 	
			인증받은 내화학성 재질여부		 
			개인보호장비 착용여부		
6	유 해 편	방제약품 비치 (중화, 흡착, 희석, 회수 등)	방제약품 사용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상의 경우 : 삽,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비치 여부 ② 액상의 경우 : 방제약품, 중화제, 건사, 삽, 흡착포 등 비치 여부 	
			종류 및 수량 적정여부		 
			방제자재 사용가능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내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비상구 및 대피로	비상구 및 대피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상구 및 대피로 확보여부 ② 유도등, 비상구 표지판 등 설치 여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비상시 유도등	유도등 작동상태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화기	소화기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화전 또는 소화기 설치여부 ② 소화기 점검 및 점검표 (월 1회 이상) 기록 여부 ③ 외부위탁 소화기 점검기록부 인정 가능
		소화기 및 소화시설 비치확인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내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유해액체	액상유독물 보관상태	외관 밀폐 상태	① 드럼 · 말통 등 유독물 용기 : 밀폐상태 · 보관 여부, 부식 및 파손 여부 
			보관용기부식 및 파손여부	
2	유해반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구분 · 보관	유독물 관리대장 및 보관상태 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여부 확인 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른 서류 검토
			칸막이 및 구획선 설치	① 저장탱크의 경우 : 혼합시 위해성 증가 우려가 있을 경우 칸막이 등 설치 여부 ② 보관시설내 용기보관의 경우 : 칸막이설치 등 물질별 구분 · 보관 여부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내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3	유해 표지	유독물 소량 유통시 유독물 표시 (유독물 취급자 외)	유독물 관리대장 및 표시상태	<p>① 유해화학물질 판매, 유통시 용기에 물질정보표시 라벨 부착 여부</p> 
5	유해 표지	유독물 표시법 준수	유독물표시법 식별가능 상태	<p>① 저장시설은 탱크에, 보관시설은 주변에 표시판 설치 여부</p> <p>② 유해화학물질 용기 또는 저장시설 주변에 물질정보표시 라벨 또는 물질정보표시판 부착 필요</p>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내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2	유해화학물질	하부배관의 파손방지	철재보강시설 설치 여부	<p>① 배관의 파손 여부 및 지지상태 확인</p> 
5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	방폭시설 손상상태	<p>① 인화점 35도 이하의 물질인 경우 : 접지선 설치 여부 및 손상 여부 (MSDS 참고) ② 방폭시설 손상 여부</p>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내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6	유해화학물질	탱크의 과충전 예방	수위계측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p>① 저장물질의 상태와 양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여부 (액위계 또는 유량계 등)</p> 
			벤트라인 설치 및 상태	<p>① 대기배출시설에 (허가증 기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 방지시설과 덕트 연결 여부 및 파손여부 확인</p>
9	유해화학물질	벤트라인	벤트라인과 방지시설 연결상태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외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야외 보관 바닥	바닥면 방수처리 여부 (방수콘크리트, 코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바닥 : 일반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바닥 두께 10cm 이상 입증자료 제시 ② 바닥면 균열 등 파손부위 사전조치 필요 ③ 상기외조건 : 바닥면 방수코팅 여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배수 시설 설치 및 하폐수 연결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비주변 적정 집·배수 시설 등 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② 방류벽, 트렌치 등 설치가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외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2	유해면	폭발,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안전장치 (경보기 등) 작동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검지기, 경보기, CCTV 중 1개 이상 설치 여부 및 전원공급상태 여부 ② 안전경보장치 설치 대상이 아닌 설비의 경우 :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CCTV, 점검 등) 여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4	야외면	도로, 배수로의 배수관리	배수 시설 설치 및 하폐수 연결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비주변 적정 집·배수 시설 등 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② 방류벽, 트렌치 등 설치 가능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외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5	<p style="text-align: center;">유해법</p> <p>창문 보호철망, 출입문 잠금장치 등 안전 설비</p>	<p>창문 보호철망,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p>	<p>① 창문의 보호철망 (실내보관에만 해당) 설치 여부 ②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및 관리 여부 ③ 주입구 잠금장치 설치 및 관리 여부</p> 
		<p>출입통제 울타리설치 (옥외보관시설)</p>	<p>① 옥외보관시설의 경우 울타리 설치(15m이상), 잠금장치 설치 및 관리 여부</p> 
6	<p style="text-align: center;">유해법</p> <p>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p>		<p>① 액체상태의 유독물 적재, 하역장소에 유출방지턱 또는 트렌치 등 설치 여부 ② 건물내부에서 적재하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정된 구역 안 또는 건물 밖으로의 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③ 주입구가 방류턱 외부 또는 실외 등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누액반이 등 설치 여부</p>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외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유해 표시판 및 안전수칙을 포함한 게시판	표시판과 안전게시판의 식별가능 상태	<p>① 실외저장·보관·시설 주변 표시판 및 안전수칙 게시판 설치 여부</p> 
3	유해 또 표	종업원의 안전교육	<p>① 허가대상시설은 교육실시 확인자료 및 교육내용의 비치 여부로 확인</p>
4	유해 또 표	유독물 성상에 따른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 방법 (유독물취급자)	<p>교육실시 자료비치</p>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외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가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유해법 액상유독물 보관상태	외관 밀폐 상태	① 드럼 · 말통 등 유독물 용기 : 밀폐상태 · 보관 여부, 부식 및 파손 여부  
		보관용기부식 및 파손여부	
2	유해법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구분 · 보관	유독물 관리대장 및 보관상태 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여부 확인 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른 서류 검토 ① 저장탱크의 경우 : 혼합시 위해성 증가 우려가 있을 경우 칸막이 등 설치 여부 ② 보관시설내 용기보관의 경우 : 칸막이설치 등 물질별 구분 · 보관 여부  
		칸막이 및 구획선 설치	
3	유해법 유독물 소량 유통시 유독물 표시 (유독물 취급자 외)	유독물 관리대장 및 표시상태	① 유해화학물질 판매, 유통시 용기에 물질정보표시 라벨 부착 여부  
5	유해법 유독물 표시법 준수	유독물표시법 식별가능 상태	① 저장시설은 탱크에, 보관시설은 주변에 표시판 설치 여부 ② 유해화학물질 용기 또는 저장시설 주변에 물질정보표시 라벨 또는 물질정보표시판 부착 필요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외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2	<p>야외표</p> <p>하부배관의 파손방지</p>	<p>철재보강시설 설치 여부</p>	<p>① 배관의 파손 여부 및 지지상태 확인</p>
			
5	<p>야외표</p> <p>탱크의 과충전 예방</p>	<p>수위계측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p>	<p>② 저장물질의 상태와 양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여부 (액위계 또는 유량계 등)</p>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실외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6	유해 화학 물질	정전기 발생방지 시설	접지시설 손상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화점 35도 이하의 물질인 경우 : 접지선 설치여부 및 손상 여부 (MSDS 참고) ② 방폭시설 손상 여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9		유해 화학 물질	벤트라인	벤트라인 설치 및 상태
			벤트라인과 방지시설 연결상태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지하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p>유해법</p> <p>표시판 및 안전수칙을 포함한 게시판</p>	<p>표시판과 안전게시판의 식별가능 상태</p>	<p>① 지하저장·보관시설 주변 표시판 및 안전수칙 게시판 설치 여부</p> <p>② 유해화학물질 용기 또는 저장시설 주변에 물질정보표시라벨 또는 물질정보표시판 부착 여부</p> 
2	<p>유해법</p> <p>종업원의 안전교육</p>	<p>교육실시 자료비치</p>	<p>① 허가대상 시설은 교육실시 확인자료 및 교육내용의 비치여부로 확인</p>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지하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유해 표	소화기	소화기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화전 또는 소화기 설치여부 ② 소화기 점검 및 점검표(월 1회 이상) 기록 여부 ③ 외부위탁 소화기 점검기록부 인정가능
			소화기 및 소화시설 비치여부	
2	유해 표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액체상태의 유독물 적재, 하역장소에 유출방지턱 또는 트렌치 등 설치 여부 ② 건물내부에서 적재하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정된 구역 안 또는 건물 밖으로의 유출방지시설 설치 여부 ③ 주입구가 방류턱 외부 또는 실외 등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누액받이 등 설치여부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지하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액체유</p> <p>액상유독물 보관상태</p>	<p>외관밀폐상태 보관용기부식 및 파손여부</p>	<p>① 누출검사용관 확인 (화관법 : 누출검사용관은 탱크당 4개소 이상설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지하저장보관시설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유해 법 유독물 저장용기의 물질정보 표시판	표시판 식별상태	<p>① 지하저장·보관시설 주변 표시판 및 안전수칙 게시판 설치 여부</p> <p>② 유해화학물질 용기 또는 저장시설 주변에 물질정보표시라벨 또는 물질정보표시판 부착 여부</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div>
3	유해 법 탱크의 과충전 예방	수위계측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p>① 저장물질의 상태와 양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여부 (액위계 또는 유량계 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4	유해 법 지하저장시설 누출확인장치		<p>① 누출검사용관 확인 (화관법 : 누출검사용관은 탱크당 4개소 이상 설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차량운반시설 및 설비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2	야행표	유독물 운반자 교육	교육실시 자료 비치	① 운반업무책임자의 교육자료 비치 여부
3	야행표	운반계획서 수립 및 제출	운반계획 자료 비치	① 유독물질 : 5,000킬로그램 (1회운반량기준) ②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 3,000킬로그램 (1회운반량기준) ③ 위 기준 이상시 운반계획서 작성 여부 확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검토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세부 점검표 - 차량운반시설 및 설비

번호	검사항목		검사기준	설치여부 등 확인 사항 / 설치사례																								
1	유해 편	차량 보호장구	보호장구 작동상태	<p>① 삽 및 개인보호구 : 2세트 이상 ② 보호구 등 형식 : 제2014-259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규정) 참조 ③ 방독면 : 상기 형식의 적정성 및 필터 유효기간 내 비치 여부</p>  																								
2	유해 편	유독물 운반차량의 표시	유독물 운반차량 표시판 식별가능 상태	<p>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표시법 준수 여부</p>  																								
3	유해 편	유독물명칭, 함량, 수량,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	유독물 카드비치 식별가능상태	<p>① 유독물명칭, 함량, 수량,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 비치 여부 : 환경부 훈령 제1137호(2015.1.18) 별표6 차량운반시설 참고</p> <table border="1" data-bbox="1239 1172 1757 1368"> <caption>유해화학물질 안전카드</caption> <thead> <tr> <th colspan="2">유독물명칭</th> <th>UN No.</th> <th>UN No.</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비밀번호 또는 기타 식별번호</td> </tr> <tr> <td colspan="2">유독물명칭</td> <td>유독물 함유량</td> <td>중요 - 고압 - 고기압 등 기타사항</td> </tr> <tr> <td>유독물명칭</td> <td>함량</td> <td>수량</td> <td>방제요령</td> </tr> <tr> <td>1</td> <td>2</td> <td>3</td> <td>4</td> </tr> <tr> <td>5</td> <td>6</td> <td>7</td> <td>8</td> </tr> </tbody> </table>	유독물명칭		UN No.	UN No.	비밀번호 또는 기타 식별번호				유독물명칭		유독물 함유량	중요 - 고압 - 고기압 등 기타사항	유독물명칭	함량	수량	방제요령	1	2	3	4	5	6	7	8
유독물명칭		UN No.	UN No.																									
비밀번호 또는 기타 식별번호																												
유독물명칭		유독물 함유량	중요 - 고압 - 고기압 등 기타사항																									
유독물명칭	함량	수량	방제요령																									
1	2	3	4																									
5	6	7	8																									

IV.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1. 중소기업사업장 화학안전관리

○ 중소기업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추진배경

- '12.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화학 사고로 국민불안이 상존하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 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확정('13.7)
- '17년까지 노후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추진계획 수립

○ 중소기업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무료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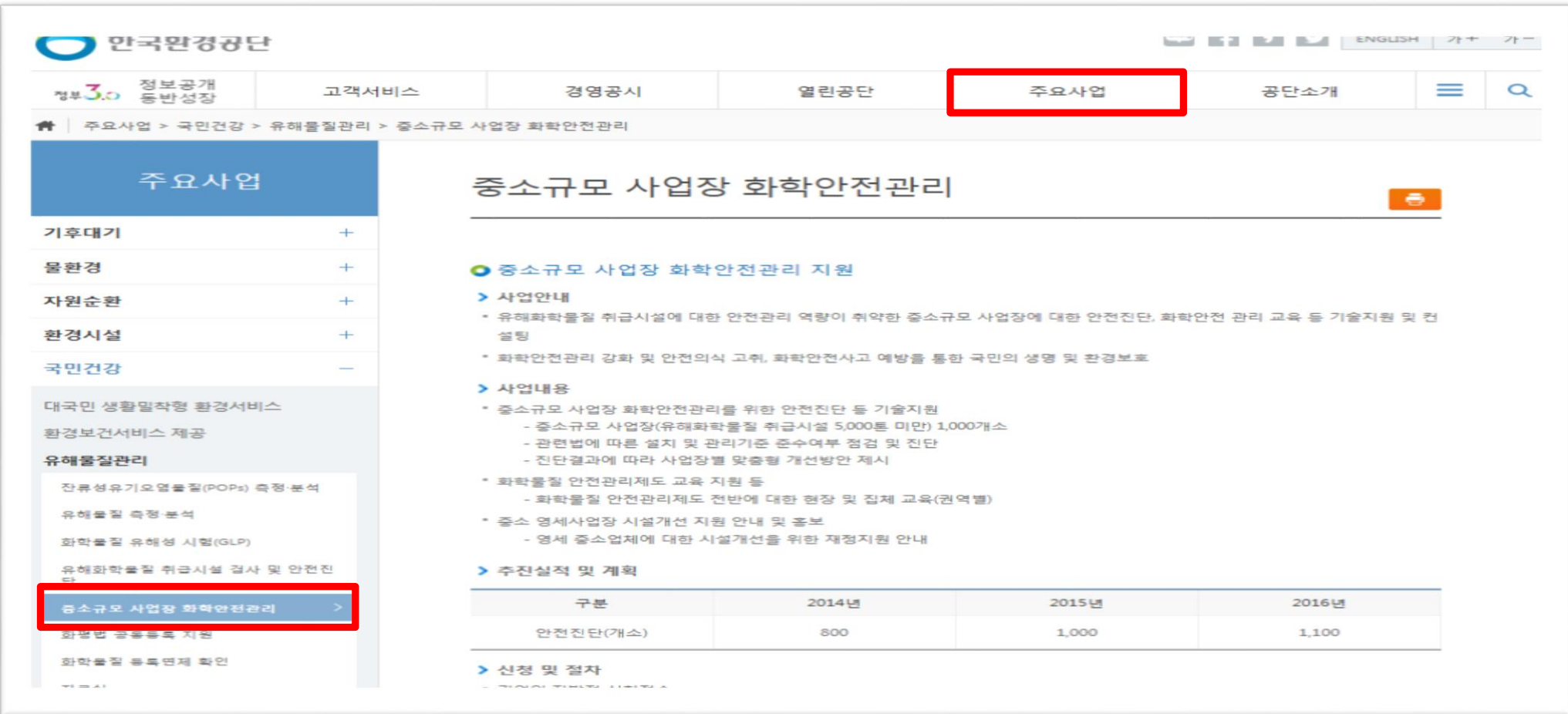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전진단, 화학안전 관리 교육 등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수행하여 화학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 화학안전사고 예방, 국민의 생명 및 환경을 보호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5,000톤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
- 관련법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진단
-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1. 중소기업사업장 화학안전관리

○ 중소기업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무료컨설팅) 신청방법

1. E-MAIL : jh.lee@keco.or.kr
2. FAX : 02-3153-0639
3. 우편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 IT밸리 8층
4.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www.keco.or.kr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interface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Navigation Bar:** Includes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고객서비스' (Customer Service), '경영공시' (Business Disclosure), '열린공단' (Open KEF), '주요사업' (Main Business -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공단소개' (Introduction to KEF).
- Breadcrumb:** 주요사업 > 국민건강 > 유해물질관리 > 중소기업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 Left Sidebar:**
 - 주요사업 (Main Business)
 - 기후대기 (+)
 - 물환경 (+)
 - 자원순환 (+)
 - 환경시설 (+)
 - 국민건강 (-)
 - 대국민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
 -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 유해물질관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측정·분석
 - 유해물질 측정·분석
 -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GLP)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highlighted with a red box)
 - 화학법 공중통독 지원
 - 화학물질 등록연계 확인
 - 기타사업
- Main Content Area:**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 사업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진단, 화학안전 관리 교육 등 기술지원 및 컨설팅
 - 화학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 화학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및 환경보호
 - 사업내용**
 -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등 기술지원
 - 중소규모 사업장(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000톤 미만) 1,000개소
 - 관련법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진단
 -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장별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교육 지원 등
 -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현장 및 집체 교육(권역별)
 - 중소 영세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안내 및 홍보
 - 영세 중소기업체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안내
 - 추진실적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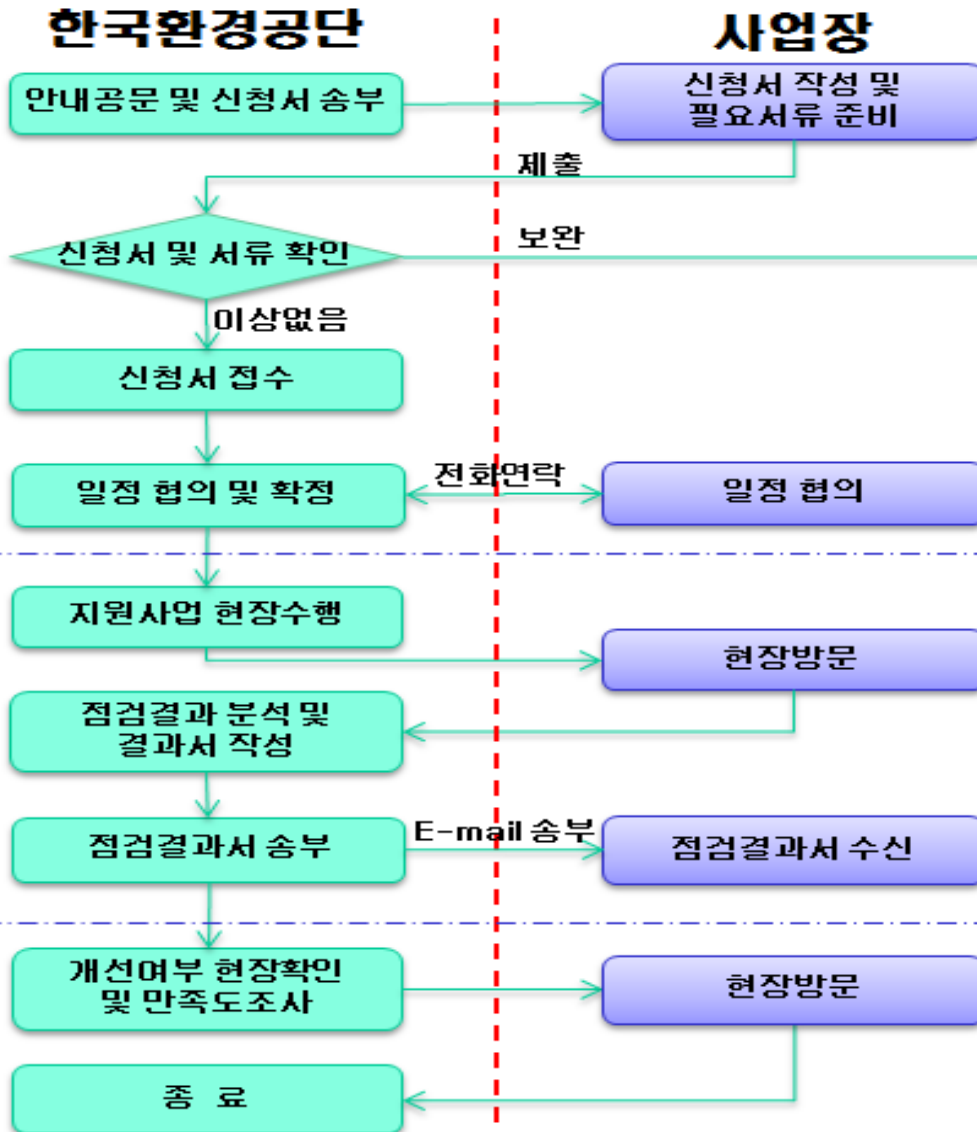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안전진단(개소)	800	1,000	1,100
 - 신청 및 절차**
 - 신청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사업장 신청 및 일정 협의

현장 점검 및 결과서

사후관리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취급시설 현황표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허가면제사업장 제외)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허가면제사업장 제외)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

- 현장 기술지원
 - 유해화학물질 관련서류 및 취급시설 점검
 - 화학물질관리법 및 관련 교육 등

- 2017년 3월 이후 방문 예정

감사합니다

